

# 1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됨.

### ◆ 증감내역 및 주요 사업 ◆

- ◇ 증감 내역: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 예산: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 기금: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 건강증진기금: 증액 56억원(8건), 감액 △26억원(3건)
    - 응급의료기금: 증액 50억원(1건), 감액 △76억원(3건)
- ◇ 주요 증액사업
  -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 → 12만원) 등
  -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 → 75개소
  -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종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 → 420만원)
  -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 주요 감액사업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 → 1.6%
-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 → 1.6%
-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 → 252천명

○ 이에 따라 '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 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

□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원단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 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하였음.

○ 최종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음.

\* 최종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종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

□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억원)

구분	'12년(A)	'13년		정부안대비		'12년 대비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총 지출	366,928	408,341	410,673	2,332	0.6	43,745	11.9	
회 계 별	【예 산】	221,815	251,727	254,056	2,329	0.9	32,241	14.5
	○ 일반회계	219,745	249,453	251,762	2,309	0.9	32,017	14.6
	○ 특별회계	2,070	2,274	2,294	20	0.9	224	10.8
	【기 금】	145,113	156,614	156,617	3	0.0	11,504	7.9
	○ 건강증진기금	18,718	18,978	19,008	30	0.2	290	1.5
	○ 국민연금기금	124,405	135,534	135,534	0	0.0	11,129	8.9
	○ 응급의료기금	1,990	2,102	2,075	△27	△1.3	85	4.3
면 야 별	【사회복지】	290,973	320,850	326,205	5,355	1.7	35,232	12.1
	○ 기초생활보장	79,028	88,411	85,531	△2,880	△3.3	6,503	8.2
	○ 취약계층지원	11,880	13,185	13,827	642	4.9	1,948	16.4
	○ 공적연금	124,415	135,539	135,539	0	0.0	11,125	8.9
	○ 보육	30,999	34,483	41,778	7,295	21.2	10,779	34.8
	○ 노인	39,040	42,642	42,931	289	0.7	3,891	10.0
	○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6,598	9	0.1	986	17.6
	【보 건】	75,955	87,491	84,468	△3,023	△3.5	8,513	11.2
	○ 보건의료	15,842	18,971	19,337	366	1.9	3,495	22.1
	○ 건강보험	60,113	68,520	65,131	△3,389	△4.9	5,018	8.3

■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 시행:

6대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계획 공고('12.12.31)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지난 2012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

○ 동 계획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 년도 말까지 수립 · 공표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 세부 사업의 종류와 내용, 발급기준, 예산,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6개 사업의 총 예산은 '12년 5,839억원에서 '13년 6,8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상자도 435천명에서 442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또한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12.9월 제정·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된다.

**<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예산 및 대상자 규모 >**

(단위: 백만원, 명)

대상 사업	예산(국비)	대상자
계	680,068	442,3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6,268	32,2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68,088	52,210
발달재활서비스	57,743	42,000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7,752	8,890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29,074	64,65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1,143	242,356

-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우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먼저,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하여 서비스 품질의 핵심요소인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 \* 대상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아울러, 일부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금만 정하고 기준가격 대비 최고 20%의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시장을 창출토록 하였다.
    - \* 대상사업: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규모가 크고 복수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사업(1월 중 확정 예정)
-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두 번째 추진방향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이다.
  -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와 개인별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장애 1급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장애 2급까지 확대되었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서비스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또한, 서비스를 보다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월 18시간, 24시간에서 월 24시간, 27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종증독거가구 등의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최종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한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및 만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된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며,
  -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

- (1차, 1/4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 (2차, 2/4분기)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 (3차, 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 (4차, 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

- 복지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http://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mcare.or.kr](http://www.longte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에서 개발하고 주민이 선택

- 보건복지부는 2013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사회서비스에 1,411억원을 투자하여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2013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143개 222억원 규모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 서비스(충남 천안·아산),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경기 안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개발되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아동(84.7%), 노인·장애인(13.3%) 등에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 신체·정신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학교 부적응·우울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국비 196억원을 투자하여 1만8천명에게 놀이치료·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 1만3천명의 어르신 등에게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밴드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21억원을 지원한다.
  - 이 외에도 인천 옹진군의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사례: 인천 옹진군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 이용자 김미경양(가명)〉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는 연평도 폭격사건 이후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입은 옹진군 연평도의 아이들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올린·첼로·플룻·클라리넷 등 클래식 악기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이 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으로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연평 초등학교 81명 어린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 2011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미경(가명)이는 피폭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떨린다며 폭격의 충격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상처받은 아이였다. 그러나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를 받으며 바이올린을 접한 미경이는 음악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상처를 치유했고, 이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보다 열심히 오케스트라와 음악 수업에 임하며 또래들과 함께 건강한 꿈을 키우고 있다.

(2012년 인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사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위한 관찰은 일자리(2012년 약 2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 심리치료사·운동지도사 등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체 종사자 중 20~30대 청년이 63.6%에 달하며, 계명대(대구)·우석대학교(전북) 등 다수의 지방 소재 대학교가 제공기관으로 참여, 서비스 제공과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2만개의 일자리 중 84.8%가 여성 일자리로서 경력단절여성·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인력 사례: 부산 영도구 노인 건강생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강봉정씨〉

강봉정씨(47세)는 졸업 후 미술 교사로 15년간 재직하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로 주부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었다. 3년 전부터 고신대 지역사회서비스센터에서 '미술을 통한 감각통합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액자만들기·클레이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감각 자극과 인지 재활을 돕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거나 행복감을 얻게 되었다. 강봉정선생님은 "내가 오래 살다보니 이런 것도 해본다"며 감격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일을 통해 다시 사회에 참여하는 기쁨과 함께 보람과 긍지를 얻고 있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오·벽지 등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단가를 높이기로 하였다.

○ 우선, 서비스 제공 시 자아존중감검사, 일상생활동작평가(ADL) 등 사전·후 효과성 검사를 의

무화하고 이를 제공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 공개하여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또, 서비스별로 서비스 종사자 대 이용자의 규모를 신설·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1:5 이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1:1 원칙 등) 신설

○ 도서·벽지나 농·어촌 등 제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 대상지역: 전북 군산, 강원 영월 등 72개 시군구(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1호)

□ 이 외에도 제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 복지부는 향후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R&D)에 총 3,094억원 지원

○ '17년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R&D 혁신역량 및 성과 창출의 비전을 담은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 시행 원년

○ '12년 대비 200억원(6.9%증)증액된 3,094억원 지원

- 주요 질환 임상연구 등('12년 880 → '13년 917억원)

- 첨단의료 및 신산업창출('12년 1,258 → '13년 1,348억원)

- 감염병 등 공공보건 연구('12년 272 → '13년 331억원)

- 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12년 423 → '13년 438억원)

□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글로벌 수준의 R&D 혁신역량 및 성과 창출을 통한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2013년 보건의료 R&D(예산 3,094억원)의 중점 투자 방향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은 '12년에 비해 약 200억원(2,893억원 → 3,094억원), 전년 대비 6.9% 증액하였다.
- 이 중 ①주요 질환 임상연구, ②첨단의료 및 신산업창출, ③감염병 등 공공보건 연구, ④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대 분야에 계속과제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약 2,541억원이며, 나머지 553억원은 신규과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 과제 주요 분야는,
  - 창의적·문제해결형 중개연구\*(115억원), 융복합 보건의료기술(65억원; 나노의학 및 동종이식기술 등), 신약 개발(110억원; 개량신약 등 임상시험 지원), 첨단 의료기기 개발(35억원), 공공보건기술개발(45억원; 희귀질환, 난치성결핵 등),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52억원), 첨단 의료산업기반기술구축(40억원), 보건의료서비스 R&D(20억원) 등이다.
  - \* 중개연구: 진단, 예방, 치료 등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력 및 연계 연구를 말함 (예: 비아그라).
- 특히 금년에는 소형 개인 단독 과제 위주의 지원보다는 과제 규모를 대형화하여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프라를 활용,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R&D 절대투자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국가전체 R&D 16조원 대비 6.8%('12년도 기준)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반적인 기술격차는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분야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R&D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 총 R&D 대비 미국 23%, 영국 13%, EU 19% 차지
- 특히 금년은 보건의료 R&D 중장기 5개년('13~'17) 추진계획 시행원년으로 '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형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분야를 수립하여 R&D 예산확보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4대 기관(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암센터)에 대하여 '13년도 시행계획의 사업 및 세부 과제에 대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이전과 달리 상반기 약 4회에 걸쳐 공모할 예정으로 사업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향후 공지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일정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 1월에 공모 예정인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2013년 2월 20일까지 전자접수를 완료하고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번 상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보건의료 R&D

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금)에 복지부 지하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간 추진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된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년 1월 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폐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으며,
  -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및 이력 추적 관리와 관련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GMP 적용업소 지정 신청 제출서류 중 ‘전년도 또는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을 삭제하고,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자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GMP 적용업소 지정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 한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에 ‘비방’의 구체적 기준이 추가된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청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 등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기능성 표시·광고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 고시 공포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과정을 담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확대·도입되는 만 3~5세 누리과정에 맞춰 기존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한 것으로
  - 고시명칭을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변경하였다.
    - 이는 어린이집이 만 3~5세(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만 0~2세(영아 보육과정)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고시 개정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학계와 현장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5세 누리과정 시행을 감안하여 보육과정을 0~4세로 하였으나,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해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 ②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3~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추가하고, 보육과정 전반에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였다.
  - ③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기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다.
  - ④ 그 외 연령에 따른 보육과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시 추구해야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 중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DVD포함) 및 3~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DVD포함, 교과부 공동개발)를 보급할 계획\*이다.
  - \* 영아보육프로그램은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실비로 구매할 수 있으며, 3~4세 누리과정 지도서는 3~4세아가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 5세 프로그램은 '12.3월 기 보급
  - 한편, 이번에 개정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에 대하여는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교사연수 진행 중('12.11~)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0~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수준별 보육·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 “향후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 보건복지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여,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 이번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자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 끝으로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적 합의기관으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보장위원회 》

- ▲ 구성: 사회보장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민관 대표자로 30명 이내
  - 정부위원(15명):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 법무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여가부·지경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15명): 위촉권자 대통령
- ▲ 임기: '13.3.16 ~ '15.3.15 (2년)
- ▲ 기능: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 주요사항 심의

○ 또한,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수립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 합의된 정책방향 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하기 위해 돌봄·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를 구축한 후 통계백서, 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합의를 일반인에게 알게 쉽게 전달할 것이다.

- 아울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부, 학계, 경영자·노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재정추계 소위 구성('13.3월)

○ 끝으로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하여 중복·누락없는 맞춤형·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12.8월) 11개 부처 198개 연계 완료, 2단계('13.2월) 16개 부처 296개 사업 연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쏘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신청 ·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지원대상 확대 내용 〉

구분	2012년 지원대상	2013년 3월 이후 지원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만 0~2세 쏘계층(보육료만 해당) 만 3~4세 소득하위 70% 만 5세 쏘계층	만 0~5세 쏘계층 (유아학비는 만 3~5세만 해당)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취학전 영유아 쏘계층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 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5세 보육료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 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만 3~5세 유아학비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0~5세 양육수당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둘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 셋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